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제출년월일 : '95. 5.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체등의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 경우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50%까지 경감하여 주므로써,
-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도시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미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년간 부과액 50만원이상인 시설물을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고 제외대상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한다 (안제3조)
- 부담금의 경감은 교통량의 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내의 경감률 적용 (안제4조 1항 및 2항)

□ 참고사항

- 근거 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 입법 예고 :

예고기간 :	'95. 4. 18 ~ 5. 8(20일간)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기타참고사항 : 교기 91115 ~ 235 ('95. 4. 1) 경기도준칙안시달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의무감축방안"이라 함은 부담금 납부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3.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의 15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상, 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고, 제외대상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 ①동법 시행령제9조의 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할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교통수요관리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나. 승용차 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지정운영하되 전체직원의 50/100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법 시행령 제9조의 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30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
 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
 4.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9:00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
 5.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월 20,000원이상 상당의 대중교통 승차권을 종사원의 100분의 75이상에게 구입·지급할 경우 100분의 10
 6.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대상시설) ①의무감축방안이니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2천제곱미터 이상, 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로 정한다.

-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를 안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안산시장은 년1회 이상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방안 이행 계획서) 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무 및 추가감축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 시행일자의 적용은 신고서에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①제7조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 기준으로 의분기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행 실태보고서를 안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태보고서를 접수한 안산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안산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에 의한 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①안산시장은 경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경감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심의 및 경감률 결정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미이행사항이 적발될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무감축방안을 미 이행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가감축방안을 미 이행할 경우 미 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95년도분 부담금액 산정시 연면적 2,000평 이상, 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단위 부담금은 350원을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500원을 적용한다.

③ (경감율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95년도 부담금액 산정시 이 조례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관리인(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재직기간
	부서명	실과명	담당계명			

상기와 같이 통근관리인을 (선임, 해임, 변경)하였기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기업체 대표 (인)

안산시장귀하

324

통근관리인(선임, 해임, 변경) 명부

교통량 감축 방안 이행 계획서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 보고서

/4분기

월 별	프로그램	분기 계			시행 1월			시행 2월			시행 3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의 무 프 로 그 램	통근관리인 선임												
	카풀제 운영												
	대중교통이용 날 운영												
	승용차10부제 운행												
추 가 프 로 그 램	통근버스운영												
	승용차 부제 운행 (5, 2)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상기와 같이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를 보고합니다.

199 년 월 일

○ ○ 기업체 대표 ○ ○ ○ (인)

안산시장귀하

경 감 신 청 서

○ 의무 프로그램 ————— 20%경감

시행 프로그램 명	시 행 실 적			시 행 기 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승용차 통근관리인선임					
함께타기 카풀제 운영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행					

○ 추가프로그램 ————— 30%까지 경감

시행 프로그램	시 행 실 적			시행기간	경감비율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운행 (5, 2)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						

상기와 같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였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5 년 월 일

○ ○ 기업체 대표 ○ ○ ○ (인)

안산시장귀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

○ 경감비율 결정 내용

구 분	프 르 그 램 명	기업체신청비율	경감비율결정	비 고
계		%	%	
의무프로그램	승용차	통근관리인 선임		
		카풀제 운영		
	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의날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영		
소 계				
추가프로그램	통근 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운행(5, 2)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상기와 같이 부담금경감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비율을 확정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 이행 프로그램	미 이행 내용
의무프로그램			
추가프로그램			

199 년 월 일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322

交通誘發負擔金 輕減措置 施行計劃

-企業體 交通需要管理에 따른 -

京畿道

○○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말한다.
2. "의무감축방안"이라 함은 부담금 납부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3.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 제2항 및 시행령제9조의15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고,제외대상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 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 ①동법 시행령제9조의 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교통수요관리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나.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지정운영하되 전체직원의 50/10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법 시행령 제9조의 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 한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30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
 3.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4.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
 5.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9:00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
 6.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하여 월 20,000원이상 상당의 대중교통승차권 을 종사원의 100분의 75이상에게 구입·지급할 경우 100분의 10
 7.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대상 시설) ①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중 2천제곱미터 이상, 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제6호에 의한 부담금 경감 비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① 관할시장은 경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경감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심의 및 경감률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후 미 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무감축방안을 미 이행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가감축방안을 미 이행할 경우 미 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를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할시장은 년1회 이상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 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방안 이행 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무 및 추가감축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 시행일자의 적용은 신고서에 제출한 날부터 적용 한다.

제8조(이행실태보고서 제출) ① 제7조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 기준으로 익분기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행 실태보고서를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태보고서를 접수한 관할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95년도분 부담금액 산정시 연면적 2,000㎡ 이상, 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단위 부담금은 350원을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500원을 적용한다.
- ③ (경감율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95년도 부담금액 산정시 이 조례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관리인(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채직기간
	부서명	실과명	담당계명			

상기와 같이 통근관리인을 (선임, 해임, 변경)하였기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 ○ 기업체 대표 ○ ○ ○ (인)

○ ○ 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통근관리인(선임, 해임, 변경)명부

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 보고서

1/4분기

월별 프로그램	분기 계			시행 1월			시행 2월			시행 3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의무프로그램	통근관리인 선임											
카풀제 운영												
대중교통 이용 날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행												
추가 프로그램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재 운행 (5, 2)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상기와 같이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를 보고합니다.

199 년 월 일

○ ○ 기업체 대표 ○ ○ ○ (인)

○ ○ 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 감 신 청 서

○ 의무 프로그램 ————— 20% 경감

시행프로그램 명	시 행 실 적			시행 기간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승용차 통근관리인 선임					
함께타기 카풀 제운영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행					

○ 추가프로그램 ————— 30%까지 경감

시행 프로그램	시 행 실 적			시행 기간	경감 비율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계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운행(5.2)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보조금 지급						

상기와 같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였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 ○ 기업체 대표 ○ ○ ○ (인)

○ ○ 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

○ 경감비율 결정내용

구 분	프로그램명	기업체 신청비율	경감비율 결정	비 고
계		%	%	
의무프로그램	통근관리인 선임			
	승용차 카풀제 운영			
	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의날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행			
소 계				
추가프로그램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운행(5,2)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상기와 같이 부담금경감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비율을 확정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 ○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 이행 프로그램	미 이행 내용
의무프로그램			
추가프로그램			

1995년 월 일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 ○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2/4